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 건의안**

**검 토 보 고**

**1. 제안경위**

가. 제출자 : 문성호 의원 외 18명

나. 의안번호 : 제2796호

다. 제출일자 : 2025. 05. 26.

라. 회부일자 : 2025. 05. 29.

**2. 주 문**

- 서울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범죄와 질서문란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기 위해 서울교통공사는 일찍이 지하철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여 철도안전법 등 관련 근거에 따라 무질서 행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 고발 조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는 지하철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 단속 및 관리 체계를 구축했음

- 하지만 지속되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무단 역사 및 지하철 점거로 인한 운영 방해 행위를 비롯, 지하철보안관에게는 실질적인 사법경찰권이 없어 범죄 및 무질서 행위 발생 시 현장 검거 등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는 것이 주된 제안 이유라고 할 것임. 경찰에 신고하는 수동적인 대처만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 및 교통권을 지키는 것에 분명 한계가 있음
-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자체적인 사법경찰권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지하철보안관 및 도시철도 운영인력 등에 사법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강력히 건의함

### 3. 제안이유

- 서울 지하철은 천만 시민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대중교통이지만 지하철 및 역사 내 무질서 상행위는 물론, 전장연의 지속되는 무단 점거로 인해 운영에 큰 방해를 가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지하철 보안관에게 행해지는 폭력 행위들로 인해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과 교통권 침해는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이에 서울교통공사에서는 2011년부터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이로 하여금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운영되고 있으나 지하철 내 무질서 및 불법 점거와 같은 방

## 해 행위들이 끊이질 않고 있음

- 특히, 전장연의 불법 점거 및 지하철 운행 방해 행위가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사법경찰권이 없는 지하철보안관으로 각종 범죄 행위를 단속하고 예방 및 대응하는 것에는 분명 한계가 있으며, 최근에는 전장연의 무질서 행위를 제재하려는 지하철보안관이 전장연의 폭력 행위로 인해 경상 등 폭행 사건도 발생하고 있음
- 광역철도의 경우에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가 국가직공무원의 신분으로 사법경찰권을 통해 철도범죄 예방과 단속 및 즉각적인 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서울 도시철도를 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등에 사법경찰권이 없는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 각종 무질서 및 불법적 행위를 단속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의 신속한 대응과 관리 강화를 위해서도 지하철보안관 등에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시민의 안전과 교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건의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나. 기타사항 : 해당 없음

다.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sup>1)</sup>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 : 원안가결

- 21대 국회 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법률안 보류 사유

- 도시철도 공사 직원에게 사법권 부여 부적절
- 과다한 사법권 부여(강력범죄, 마약범죄 등 포함)
- 지하철 경찰대와 역할 중복
- 사법경찰권은 일반적 경찰권이 미치지 못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 허용

## 5. 이 송 처

가. 국회 : 국토교통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나. 정부 : 국토교통부, 법무부

---

1) 도시철도과-6976(2025.6.4.) “제331회 정례회 의원발의 의안에 대한 의견 제출”

## 6.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장훈)

### 가. 개요

- 동 건의안은 서울지하철 내 반복되는 무질서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지하철 안전운행 및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하철 보안관에게 사업경찰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 나. 검토의견

- 서울 지하철은 일일 평균 수백만 명의 시민이 이용하는 핵심 대중 교통수단으로 공공안전 확보와 질서 유지가 매우 중요한 시설임에 따라 서울교통공사는 '11년부터 '지하철보안관' 제도를 도입하여 '25년 현재 272명의 지하철보안관이 최소한의 안전 유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사법경찰권이 부여되지 않아 범죄 발생 시 즉각적 대응에 구조적인 한계를 안고 있음

### ※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 운영현황(공사 내부자료)

구 분	고객안전지원센터	영업사업소
근무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상가 및 기동반 : 46명</li><li>· 상가관리반 : 6개반</li><li>· 기동반 : 2개반</li></ul>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0개 전담영업사업소 : 226명</li><li>· 무질서 빈발 구간역 집중 배치 (2호선 58명, 7호선 38명 등)</li></ul>
출·퇴 근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1~4호선 16개, 5~8호선 14개 소재 역 출퇴근</li></ul>	
관리책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평일주간: 센터장, 전담관리부장 / 공휴일, 야간 : 소재역 부역장</li></ul>	
주요임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지하철 범죄 예방 및 무질서 단속을 통한 안전한 지하철 제공</li></ul>	
도입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2011.7.25.</li></ul>	

- 최근 사회적 이슈사항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반복적 지하철 점거 시위로 서울시민의 이동권과 안전이 실질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며, 지하철 역사 및 전동차 내부의 무단 점거 등으로 열차운행을 방해하고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와 지하철 보안관 간의 물리적 충돌<sup>2)</sup>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서울교통공사 불법시위에 대한 법적조치 현황

소제기일	'21.11월	'23.1월	'23.4월	'24.3월
피 고	전장연 등 6명	전장연 등 14명	전장연 등 8명	전장연 등 12명
관련시위	1~7차 시위	8~82차 시위	83~88차 시위	89~96차 시위
청구금액	51백만원	601백만원	128백만원	129백만원
진행상황	1차 변론('23.4월)	자료 제출 단계	1차 변론('25.1월)	1차 변론('24.7월)

- 이와 같은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점거 행위에 대해 사법권 제약으로 적절히 대응하지 못함에 따라 공공질서 유지는 물론 시민 불편 해소에도 한계가 있으며, 해당 행위의 반복성을 고려할 때 실효성

2)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피해 현황(2025년 집계 중)

(단위 : 건, %)

구 분	원인별 부상 현황				
	계	휠체어 충격	신체접촉	도구사용	기타
계(%)	30(100%)	16(53.3%)	9(30.0%)	3(10.0%)	2(6.7%)
'24년	18	7	7	2	2
'23년	11	9	2	0	0
'22년	1	0	0	1	0

## 있는 사법조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서울교통공사 등 도시철도 운영기관에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sup>3)</sup>에 따른 사법경찰관리 권한이 부여되지 않고 있어 사실상 현장 대응력을 상실한 채 형식적 조치에 머물고 있음
- 그러나,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경우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규정에 따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sup>4)</sup>라는 독립적인 조직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이들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사법경찰 관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철도 내 범죄예방과 단속, 철도사고 수사 등을 담당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보안관’에 대한 형평성 문제와 함께 서울지하철 안전운행 도모를 위한 사업권 부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3)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 (검사장의 지명에 의한 사법경찰관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로서 그 소속 관서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한 자 중 7급 이상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위 이상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8급·9급의 국가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및 소방장 이하의 소방공무원은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한다.

11.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 기관에 근무하며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4급부터 9급까지의 국가공무원

4)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조(소속기관)② 국토교통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지방국토관리청·지방항공청 및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둔다.

## ※ 철도 운영기관별 안전확보 요원 운영현황 (교통공사 내부자료)

구 분	서울교통공사 노선	한국철도공사 노선	
업무담당	지하철보안관	지하철경찰대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운영기관	서울교통공사	서울지방경찰청	국토교통부
담당자신분	공사 직원	경찰공무원	국가공무원
운영인력	272명	118명	465명(173명*)
업무범위	열차 및 역 순찰, 무질서 행위 단속	열차 및 역 순찰, 범죄사건 대응	치안유지, 수사 (수사과 별도 존재)
관할구역	구역별(10개소)배치	각 호선 주요역사 (2~3명)	철도사법경찰대장 /각 지역 경찰센터

\* 상기 인원은 각 기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동 개정건의안은 단순히 지하철보안관 등의 단속인력을 증원하거나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반복적인 범죄 및 무질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지하철보안관 등 운영기관 임직원에게 일정한 범위의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도록 관련 법령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시민 안전 확보, 공공질서 회복,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충분히 개정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참고로 서울시는 '11년부터 '21년까지 총 6차례의 법률 개정을 건의하고 수차례 국회 및 법무부 담당부서장 등을 면담을 추진한 바 있음
- 따라서, 관련 정부 부처 및 국회에서는 본 건의안을 심도 있게 검

토하여 도시철도 내 반복되는 범죄와 사회 갈등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현장대응력을 강화 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법 개정에 대해 논의을 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할 것임